

2011. 2. 26. 시행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일반경찰(남·여) · 101경비단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조태엽 교수

www.kpa.co.kr

www.kpa.co.kr

1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관여한 행위가 형법 총칙상의 교사, 방조에 해당될 경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②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
- ④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지게 할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였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해설** ➡ ① 틀리다.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도 없다(대판 2004.10.28, 2004도3994).
- ② 옳다. 대판 1987.12.22, 87도1699
- ③ 옳다. 대판 1991.1.15, 90도2257
- ④ 옳다. 대판 2008.3.13, 2007도10804

2 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 ②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해상강도치사죄 등이 있다.
- ③ 형의 경중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순서에 의한다.
- ④ 「소년법」 제59조는 판결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해설** ➡ ① 옳다. 형법 제42조
- ② 옳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제164조 제2항), 해상강도치사죄(제340조 제3항)
- ③ 옳다. 형법 제50조 제1항, 제41조
- ④ 틀리다. ‘판결 당시’가 아니라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규정이다.

3 폭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③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 ④ 폭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한다.

해설 ▶ ① 틀리다. 폭행에 해당한다(대판 1990.2.13, 89도1406).
 ② 옳다. 대판 2010.5.27, 2010도2680
 ③ 틀리다.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3.1.10, 2000도5716).
 ④ 틀리다. 폭행죄의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나, 미수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4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남편이 부재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처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②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게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게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된다 할지라도 그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 ③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④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자동차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 ① 옳다. 대판 1984.6.26, 83도685
 ② 옳다. 대판 2010.3.11, 2009도5008
 ③ 옳다. 대판 1997.3.28, 95도2674
 ④ 틀리다. '자동차'는 규정이 없고, '점유하는 방실'이 규정되어 있다(제319조).

5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금품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② 전 남편에 대한 음주운전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

- 5 -

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원소가 될 수는 없다.

- ②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甲은 가정법원의 서기관이 교부한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③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④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의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 해설** ➤ ① 옳다. 대판 1996.3.26, 95도3073
 ② 옳다. 대판 2009.1.30, 2006도7777
 ③ 틀리다. 공문서가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2008.1.17, 2007도6987).
 ④ 옳다. 대판 2008.2.14, 2007도9606

12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취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가 국가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연구소라는 단체의 명의로 체결한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상의 과업 내용에 의하여 국립대학교 교수가 위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서 수행하는 조사용역업무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1,000만원을 뇌물로 받아 그 중 500만원을 술을 마시느라 소비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은행에 예금하여 두었다가 이를 인출하여 乙에게 반환한 경우, 甲으로부터 500만원을 추징하고 乙로부터 500만원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 해설** ➤ ① 옳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으로 처벌된다(대판 2007.10.12, 2005도71122).
 ② 옳다. 대판 2008.2.1, 2007도5190

- 7 -

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① ㉑, ㉒, ㉓

② ㉒, ㉔, ㉕

③ ㉑, ㉒, ㉔

④ ㉒, ㉔, ㉕

해설 ㉑ 틀리다. 피고인이 매수한 히로뽕 2g에 관하여만 몰수·추징을 선고하고 투약된 히로뽕의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 사례이다(대판 1997.3.14, 96도3397).

㉒ 틀리다.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에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08.2.14, 2007도10034).

㉓ 옳다. 대판 2008.10.9, 2008도7034

㉔ 옳다. 대판 1984.5.29, 83도2680 ; 대판 2010.7.8, 2010도3545

㉕ 옳다. 대판 1999.6.25, 99도1900

15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자기 명의의 계좌에 추가로 송금된 3억 2,000만원이 피해자 측에서 착오로 송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 ②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 ③ 종중의 회장으로 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단, 임야를 이전받은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없었다.)
- ④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해설 ①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5.10.28, 2005도5975).

②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2.29, 2007도11029).

③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5.6.24, 2005도2413).

④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7.5.31, 2007도1082).

16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㉑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

- ㉔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판 1974.11.12, 74도2676).
- ㉕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판 1971.10.12, 71도1356).
- ㉖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1989.2.14, 87도1860).

20 甲에게 임의적 감면사유가 존재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❶ 甲이 피해자 외 2인에게 깨진 병과 벽돌 등으로 집단 구타당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곱깡이 자루를 마구 휘두른 결과 피해자가 머리 뒷부분을 맞고 사망한 경우
- ❷ 甲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폭행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그 이상 강간의 실행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
- ❸ 통화위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甲이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 ❹ 甲은 A에게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에 따라 승용차를 제공하였고, A가 이를 운전한 경우

- 해설** ➡ ①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를 인정한 사례로서,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대판 1985.9.10, 85도1370).
- ② 강간죄의 중지미수이므로(대판 1993.10.12, 93도1851),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26조).
 - ③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213조 단서).
 - ④ 무면허운전이라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중범이므로 정범의 형보다 형을 감경한다(형법 제32조 제2항).